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4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김예지·서미화·백종헌

김선교 • 박덕흠 • 엄태영

김소희 · 송석준 · 최수진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.

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또한,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·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 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 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조 등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경우
- 7.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한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 중 "제75조에"를 "제75조제1항 단서에"로, "격리시키거나 묶는"을 "격리"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"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"를 "격리시키거나"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"격리시키거나 묶는"을 "격리시키는"으로, "제1항에"를 "제1항 단서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해당"을 "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"으로 한다.

다만,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다.

제84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.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자
- 14.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격리한 자 제86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정신의료기관의 개설・운	제19조(정신의료기관의 개설・운
영 등) ① ~ ③ (생 략)	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4
수・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	
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	
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
	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
	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
	제한을 한 경우
<u><신 설></u>	7.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
	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한 경
	<u> 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기록보존) ① 정신건강증	제30조(기록보존) ①
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	
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	
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	
료기록부 등에 작성・보존하여	
야 한다.	

- 1. ~ 7. (생 략)
- 8. <u>제75조에</u> 따른 <u>격리시키거나</u> <u>묶는</u>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 유 및 내용
- 9. · 10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
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<u>치료 또</u>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건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 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제75조제1항 단서에</u> 따른 <u>격</u>
리

0 10 /뒴케키 키.()
9. •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
<u>격</u>
교 리시키거나
다만,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
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
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
격리시킬 수 있다.
<u> </u>
(2)
격리시키는

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할 수 있다.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제8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2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제8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9. (생략)
 - 10.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

	-
	-
	-
-제1항 단서에	-
 보건복	
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리	_
해당	_
제84조(벌칙)	-
	-
	-
1. ~ 12. (현행과 같음)	
13.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격	ļ L
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	
적 제한을 한 자	
14.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격]
리한 자	<u>_</u>
제86조(벌칙)	_
	_
1. ~ 9. (현행과 같음)	
<삭 제>	
<u> </u>	

11. (생략)

11. (현행과 같음)